

1.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 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인정자만 편입학 할 수 있음에 따라, 1학년 이상 수료자도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.
- 2) 온라인수업 개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.
- 3) 학과 통폐합에 의한 폐과 삭제.
- 4) WM푸드몰에 필요한 연계학과 삽입하여 명시

나. 주요내용

- 1) 현행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전문대학 예외조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에 명확한 학칙개정이 필요함.
- 2) 온라인수업 개설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.
- 3) 호텔관광과, 의료관광코디과와의 통폐합으로 의료관광코디과 폐과와 관련하여 의료관광코디과 삭제
- 4) 현장실습 연계를 위한 WM푸드몰에 호텔관광과 명시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 (안)

현행	개정 (안)
제25조(편입학) ① 전문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. 제35조(수업)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학기 수업, 방송통신과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학습 수업을 할 수 있으며,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25조(편입학) ① <u>전문대학 졸업자, 타 대학에서 1학년을 수료한 자(32학점 이상 수료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다.</u> 제35조(수업) ① -----<u>계절학기 수업, 온라인수업,</u> ----- ----- -----
제83조(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) 1. WMTC는 <u>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, 의료관광코디과</u>와 연계하여 일반여행업, 의료관광, 외국인환자유치업, 유학원 및 어학원을 사업내용으로 한다. 2. 생략	제83조(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) 1. ----- <u>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</u>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

3. WM푸드몰은 <u>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</u> 와 연계하여 식품을 제조, 가공, 판매 등의 사업을 한다.	3. ----- <u>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, 호텔관광과</u> ----- -----.
4.~5. 생략	4.~5. (현행과 같음)
제84조(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과 학점 및 교육과정) ① 유관학과의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장으로 학교기업의 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다. 1. 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, 의료관광코디과는 현장실습을 위해 WMTC의 사업장을 주로 이용하며, 공간전 효율성제고를 위해 호텔관광과 여행사실습실과 <u>의료관광정보실습실(항공예약발권실습실)</u> 을 이용할 수 있다. 2.~3. 생략 4. <u>미용피부테라피과, 미용피부관리과, 허브테라피향장과</u> 는 현장실습을 위해 WM힐빙테라피의 사업장을 이용하며, 학과 두피모발관리실습실과 허브제조실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 ②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1. WMTC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<u>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, 의료관광코디과</u> , WM주얼리컴퍼니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주얼리디자인과, <u>WM푸드몰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외식조리과, WM힐빙테라피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미용피부테라피과, 미용피부과, 허브테라피향장과, WM카페테리아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외식조리과, 식품영양과, 호텔관광과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, 1학기당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</u> ③ 생략	제84조(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과 학점 및 교육과정) ① (현행과 같음) 1. <u>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</u> ----- ----- <u>항공예약발권실습실</u> 을 이용할 수 있다. 2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미용피부테라피과</u> ----- ----- -----. ② -----. 1. ----- <u>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,</u> ----- <u>WM푸드몰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외식조리과, 식품영양과, 호텔관광과,</u> ----- <u>미용피부테라피과,</u>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학사내규 개정(안)